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행정기본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총리 한덕수 (법제처 소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및 고지 절차를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후에 고지하거나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본법」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,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유를 정하는 한편,

이의신청에 대한 보완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통지 사항 명확화(안 제5조제2항)

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변경한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바, 주된 인허가의 변경에 취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.

나. 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 사유(안 제10조의2 신설)

즉시강제 집행 시 게시판 등에 공고함으로써 즉시강제의 고지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를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

주소·거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하였으나 그 주소나 거소 등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 등으로 정함.

다. 이의신청 제도 보완(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)

- 1) 이의신청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신청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그 보완기간은 이의신청 결과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.
- 2)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제처장은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변경했을”을 “취소 또는 변경했을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공고에 의한 즉시강제의 고지) 법 제33조제3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·거소(居所)·영업소·사무소·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
2.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 그 주소·거소·영업소·사무소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
3.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기를 거부하는 경우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

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, 제4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고 7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.

⑦ 법제처장은 행정청이 이의신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의 통지) ① (생 략) ② 주된인허가 행정청은 법 제 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주된인 허가를 하거나 법 제26조제2항 에 따라 주된인허가가 있는 후 이를 <u>변경했을</u> 때에는 지체 없 이 관련인허가 행정청에 그 사 실을 통지해야 한다. ③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5조(인허가의제 행정청 상호 간 의 통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취소 또는 변경했을</u>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<u>제10조의2(공고에 의한 즉시강제</u> <u>의 고지) 법 제33조제3항제3호</u> <u>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</u> <u>가피한 사유로 고지할 수 없는</u> <u>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</u> <u>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 1. 통상적인 방법으로서는 재산의 <u>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·</u> <u>거소(居所)·영업소·사무소</u> <u>·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</u> <u>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경우</u> 2. 등기우편으로 재산의 소유자 <u>또는 점유자에게 법 제33조제</u> <u>3항 본문에 따라 고지했으나</u>

제11조(이의신청의 방법 등) ① .

② (생략)

<신청>

<신청>

③ . ④ (생략)

<신청>

그 주소·거소·영업소·사무
소에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
유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
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

3. 재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
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고지받
기를 거부하는 경우

4.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
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재산의
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고지
가 불가능한 경우

제11조(이의신청의 방법 등) ① 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
은 행정청은 그 내용에 보완이
필요하면 보완해야 할 내용을
명시하고 7일 이내에 적절한
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
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법
제36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
결과 통지 기간에 포함하지 않
는다.

⑤ . ⑥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같음)

⑦ 법제처장은 행정청이 이의신

	<u>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</u>
--	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	
연 락 처	(044) 200 - 6741